

#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4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기능·위촉·임기·교육, 관리 및 해촉,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3조~제8조)

다.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2백만원 확보(활동비 실비보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2.~3. 14.

나) 예고결과: 의견 있음(미반영 2건)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3조)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김은애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 안전 관련교육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 요청	안전보안관 운영 취지는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안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에 있음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 “안전관련교육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하는 것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의견으로 미반영함	미반영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생활, 교통안전교육 실시” 추가 요청	안전보안관의 활동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미반영함  ※ 「재난안전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미반영

##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거창군 안전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거창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4조(위촉)**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4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대표단의 운영 등) ① 대표는 대표단을 대표하고 대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3-4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최근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지원계획,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을 정함(안 제7조)
  - 1) 대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 범위: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 라. 사후관리, 중복지원 제한, 업무의 위탁,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정함(안 제8조~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4,000천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2.~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건설탕: 전부반영

##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 및 재원 조달방법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침수방지시설을 결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설치
2.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안 제7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공동주택: 19,200천원

= 3개소×8,000천원×80퍼센트

### 2.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4,800천원

= 3개소×2,000천원×80퍼센트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4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9,28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7.~3. 2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조 제목 “(예산 편성·결산·운용)”을 “(준용)”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제4조(예산 편성·결산·운용)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 나. 관련 조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계	9,285,431	9,378,285	9,472,068	9,566,788	9,662,456	47,365,028
기금	9,263,431	9,356,065	9,449,626	9,544,122	9,639,563	47,252,807
군비	22,000	22,220	22,442	22,666	22,893	112,221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주민지원사업: 988,154천원
- 2.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6,433,000천원
  - 나. 환경기초시설 운영: 1,706,969천원
  - 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115,677천원
- 3. 일반회계 전출금
  - 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6,631천원
- 4. 낙동강수계기금 정산잔액 반환금: 15,000천원

작성자 환경과장 곽칠식



#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4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인용 상위법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2조)

- 1)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 변경: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1조·제5조·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712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3.~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조 제목 “(설치)”를 “(설치 및 세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로 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5조 중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를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창군수가”로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 제7조) 조 제목 “(관리·운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를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45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설치)</u> 거창군수는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u>제2조(설치 및 세입)</u> 거창군수는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령</u>”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u>제3조(존속기한)</u>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u>제3조(존속기한)</u>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u>제4조(세출)</u> 특별회계 세출은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p>	<p><u>제4조(세출)</u> 특별회계 세출은 <u>령</u>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p>
<p><u>제5조(금고의 설치)</u>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u>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u>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p>	<p><u>제5조(금고의 설치)</u>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u>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창군수가</u>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p>
<p><u>제7조(관리·운용)</u>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u>제6조(준용)</u>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

나. 관련 조문: 세출(제4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711,590	711,590	711,590	711,590	711,590	3,557,950

3. 관련 의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역 균형 발전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기준)

가. 합천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711,590천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4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요금 등 수입금의 관리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나. 세출 삭제함(안 제4조)

- 1) 근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
- 2) 내용: 전국적 통일을 위해 특별회계 용도 신설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전 조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47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27.~3.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입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중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를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관리·운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를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생략)</u>  <u>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u>  <u>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법 제7조제1항·제3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폐지</u>  <u>2. 법 제8조, 법 제13조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관리</u>  <u>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외,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u>  <u>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중 특별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에 한정함</u>  <u>5.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주차관련 사업</u></p>	<p><u>&lt;삭 제&gt;</u></p>
<p><u>제5조(세입징수)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u></p>	<p><u>제5조(세입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u></p>

<p><u>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u></p> <p><u>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u></p> <p><u>제7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p><u>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u></p> <p><u>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u></p> <p><u>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u></p> <p><u>제7조(준용)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	--



#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등
- 나. 관련 조문: 「주차장법」 제21조2제4항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479,625	494,015	508,836	524,101	539,824	2,546,401

### 3. 관련 의견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과태료 등의 관리와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 있음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거창군 노상주차장 현행화 용역: 22,000천원
2.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 92,000천원
  - 가.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나.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15개소)
  - 다. 공한지 소규모 무료주차장 조성
3. 주차시설 및 주정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4,337천원
4. 선진교통문화조성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181,288천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4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거창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3조·제5조의2·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75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28.~3.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2조의3”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창군”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으로 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li> <li>2. “농업법인”이란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li> <li>3. “생산자단체”란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li> <li>4. (생략)</li> </ol>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li> <li>2. “농업법인”이란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li> <li>3. “생산자단체”란 「<u>농업협동조합법</u>」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li> <li>4. (현행과 같음)</li> </ol>
<p><b>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b></p> <p>① <u>거창군</u>(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b>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b></p> <p>①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b>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b>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b>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lt;신 설&gt;</p>	<p><b>제5조의2(준용)</b>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b>제13조(시행규칙)</b>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농업발전자금 용자 지원
- 나. 관련 조문: 용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제6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750,628	3,750,628	3,750,628	3,750,628	3,750,628	18,753,14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농업발전자금 용자 지원: 3,000,000천원
- 2.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50,000천원
- 3. 운영비: 6,000천원(사무관리비, 국내여비)
- 4. 적립금 및 예비비: 694,628천원

작성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4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귀농세대 지원 나이를 확대하여 노후를 거창에서 귀농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적극 유인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1) 귀농인: 법령을 인용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함

2) 귀농세대

가) 현행: 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

나) 변경: 20세 이상 65세 이하

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등록대상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가 귀농인 확인 서류로 부적합하여 삭제

나. 법령 재기재사항 등 정비(안 제19조, 제1장~제4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3.~3. 2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농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이라 한다)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제3조 앞의 “제2장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를 삭제하고 제3조 조 제목 “(설치)”를 “(귀농정책위원회 설치)”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귀농 지원”을 삭제하고 제16조 앞의 “제4장 보칙”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장 총칙</b></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li> <li>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u>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u>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u>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u>을 말한다.</li> </ol> <p>▷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gt;농지대장으로 명칭변경, 작성대상 변경(1천㎡ 이상→모든 농지)에 따라 귀농인 정의 구체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u>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u>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li> <li>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u>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u></li> </ol> <p><b>제2장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b></p> <p><b>제3조(설치)</b>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p>	<p><b>&lt;삭 제&gt;</b></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li> <li>2. “귀농인”이란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을 말한다.</li> </ol> <p>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이라 한다)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u>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u></p> <p>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u>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u>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li> <li>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u></li> </ol> <p><b>&lt;삭 제&gt;</b></p> <p><b>제3조(귀농정책위원회 설치)</b>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p>

하여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장 귀농 지원

제4장 보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삭 제>

<삭 제>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나. 관련 조문: 정의(안 제2조), 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안 제15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000	330,000	346,500	364,000	382,000	1,722,500

※지원대상 확대 2년차 10퍼센트 증가, 이후 매년 5퍼센트 증가 예상

3. 관련의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군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확대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가. 대상: 세대주가 20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세대 60세대

나. 사업비: 300,000천원 = 5,000천원 × 60세대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3-4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외식업소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외식업소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라.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선정을 정함(안 제8조)
- 마.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9조~제16조)
- 바. 명칭사용의 금지, 사후관리 등을 정함(안 제17조·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51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2.~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입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3.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소로서 군에서 선정한 외식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식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외식업소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
2. 대표음식·대표음식점의 관광 상품화 등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교육, 현장 자문
  - 나. 안내책자 발간 등 홍보, 위생물품 지원

- 다. 방역, 해충방제 등 위생관리
- 2. 음식점 내외 환경 및 시설의 개선
- 3.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대표음식의 개발, 보급 및 육성
  - 나. 대표음식점 표지판 설치
  - 다. 광고, 안내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
  - 라. 관광 상품화를 위한 관련 축제 개최
- 4. 우수 외식문화 탐방·체험, 음식거리 조성
- 5. 그 밖에 외식업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 1. 대표음식점
- 2.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외식업소
- 3.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외식업소
-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식업소 또는 관련 단체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대표음식 등 선정)**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표음식, 대표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대표음식은 군수가 발굴할 수 있다.

③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외식업소 육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대표음식점 선정 및 선정취소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
3. 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4. 외식업소 육성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촌과장, 민원소통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기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외식·관광 또는 식품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식업소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명칭사용의 금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점에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외식업소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지원사업(안 제5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151,000	151,000	151,000	151,000	151,000	755,00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음식거리 조성 사업: 96백만원

가. 위생 등 교육 10, 시설개선 56, 홍보마케팅 30

#### 2. 음식관련 축제 개최: 55백만원

가. 거창데이 행사 30, 사무관리비 등 25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